

Implementing rules of  
Omnibus Law for:  
- Income Tax <sup>P1</sup>  
- Value Added Tax <sup>P5</sup>  
- General Tax Provisions  
and Procedures <sup>P7</sup>

## 옴니버스 법의 시행규정

재무부는 옴니버스 법(Law No.11 Year 2020)에서 개정된 사항 중 소득세, 부가세 및 국세기본법(*Ketentuan Umum Perpajakan/KUP*)에 대한 시행규정으로 재무부령 No.PMK-18<sup>1</sup>을 2021년 2월 17일자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재무부령은 옴니버스 법의 세무관련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GR-9<sup>2</sup>과 함께 중요한 시행규정에 해당합니다. GR-9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행한 [Omnibus Flash No. 02/2020](#) 및 [Omnibus Flash No. 07/202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MK-18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Income Tax)

### A. 내국 과세 대상(Domestic Tax Subjects)의 조건의 명확화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인도네시아에 거소를 두거나, 12 개월 내에 183 일 이상 거주하거나,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 과세 대상(*Subject Pajak Negeri/SPDN*)으로 간주합니다.

PMK-18 은 거주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개인이 “인도네시아 내에 거소(residing in Indonesia)”를 두는 것으로 보는 경우:

<sup>1</sup> MoF Regulation No.18/PMK.03/2021 (PMK-18) dated and effective from 17 February 2021

<sup>2</sup> Government Regulation No.9 Year 2021 (GR-9) dated and effective from 2 February 2021

- ✓ 인도네시아 내에 개인이 소유, 임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으며, 단순한 환승 목적이 아닌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
  - ✓ 인도네시아 내에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를 두는 경우;
  - ✓ 인도네시아 내에 상시 거주하는 거주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서류가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영구적 거주 허가 (*Kartu Izin Tinggal Tetap/KITAP*);
    - ✓ 제한적 거주 비자 (*Visa Tinggal Terbatas/VITAS*);
    - ✓ 제한적 거주 허가 (*Izin Tinggal Terbatas/ITAS*);
    - ✓ 183 일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는 고용계약이 있는 경우;
    - ✓ 기타 보충적 서류(예를 들며, 183 일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는 임차계약,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

## B. 국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국민

PMK-18 은 *Warga Negara Indonesia(WNI)*에 대하여 국외 과세 대상(*Subjek Pajak Luar Negari/SPLN*)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PMK-18 에 따라 항구적 거소,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상시 거주하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타이브레이커(tie-breaker) 규정에 따라 세무상 지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이브레이커 분석에 따라 거주지가 인도네시아 국외로 결정되는 경우, 개인은 다음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 세무상 거주자로 등록하여야 함(거주자 증명원(CoD)으로 증명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 시민(WNI)이 국외 과세 대상(SPLN)이 되는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준수 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 시민이 국외 과세 대상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DGT 에서 발행하는 확인서(“SPLN Certificate”)를 보유하여야 함.

인도네시아 시민이 타이브레이커 규정에 따라 국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인도네시아 시민이 “선의(Good)”로 인도네시아를 떠난 인도네시아 시민으로 취급되며, 인도네시아를 떠나는 시점부터 국외 과세 대상이 적용됩니다. 개인은 인도네시아 출국 전에 비활성 납세자(Non-Effective Taxpayer)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민이 국외 과세 대상 및 비활성 납세자 지위를 충족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창출된 소득이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과세의무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창출된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상 비거주자로서의 과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세무서가 향후에 인도네시아 시민이 국외 과세 대상 기준(SPLN)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SPLN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 비활성 납세자 지위는 무효가 되며 내국 과세 대상(SPDN)으로 과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C. 외국인에 대한 국가별 과세 제도(Territorial taxation for foreigners)

옵니버스 법은 외국인(인도네시아 시민이 아닌)이 인도네시아 세무상 거주자로서 내국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인도네시아 원천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는 고용, 서비스 및 활동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대가가 지급되는 소득 포함). 이러한 외국인은 PMK-18 의 Attachment II 에서 명시한 목록의 포지션의 전문성 요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문성은 반드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정부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학위 또는 과학, 기술 또는 수학 분야에서 최소 5 년 이상의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 지식 이전에 대한 의무 준수.

동 국가별 과세제도는 최초 4 년의 거주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이 됩니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고 4 년 이내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오는 경우, 4 년의 기간은 외국인이 최초로 내국 과세 대상(SPDN)이 되는 시점부터 계상됩니다.

외국인이 국가별 과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DGT 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별 과세제도를 승인 받은 경우, 국외 원천 소득을 연간 소득세 신고서(Annual Income Tax Return)에 포함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문성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PMK-18 의 발효 이전에 내국 과세 대상(SPDN)이 된 경우, 동 외국인이 4 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국가별 과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과세제도가 승인된 경우, 동 외국인은 2020 년 11 월 2 일부터 적용이 시작되며, 4 년의 만기시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외에서 소득을 수령하여 인도네시아와 소득원천 국가간의 조세조약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하여는 국가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D. 인도네시아인이 수령하는 배당 및 국외 소득

옴니버스 법은 국내 및 국외에서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와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당과 국외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내에 특정기간 동안 “재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PMK-18 은 재투자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재투자 의무

적격한 재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시장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 ✓ 국채 (샤리아 율법에 따른 국채 포함);
  - ✓ 국영기업(SoE), 국영 금융 회사, OJK(*Otoritas Jasa Keuangan*)의 감독하에 거래되는(상장된) 민간회사가 발행한 채권(*sukuk*);
  - ✓ 샤리아 은행을 포함한 은행(*Perception bank*)에 대한 금융투자;
  - ✓ 기타 법적 형태의 투자.
- 금융시장외에 금융상품의 투자하는 경우:
  - ✓ 민관파트너십 형태(*PPP scheme*)로 진행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
  - ✓ 정부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real sector*(*Sektor riil*)에 투자;
  - ✓ 신규 또는 기존 회사의 인도네시아 지분에 투자;
  - ✓ 인도네시아 국부펀드(*Lembaga Pengelolaan Investasi*)와 협력 협정;
  - ✓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에 대여.

PMK-18 은 각각의 카테고리 별로 투자 상품의 유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투자 기간은 3 년이며, 다음의 매커니즘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는 배당 또는 국외소득을 과세기간 종료 후 3 개월(개인납세자) 또는 4 개월(법인납세자) 내에 적격한 투자상품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 재투자자는 배당 또는 국외소득을 수령한 과세연도로 부터 최소 3 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재투자자는 다른 적격한 투자 상품 이외에는 이전 될 수 없습니다.

### 2. 예외규정

옴니버스 법하에서 배당 및 국외 소득의 과세 예외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유형	재투자 의무	금액기준
법인납세자가 내국법인으로 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개인납세자가 내국법인으로 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있음	없음
납세자가 국외 상장 법인으로 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있음	없음
납세자가 국외 비상장 법인으로 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있음	30%*
고정사업장(PE)으로 부터 받는 국외소득	있음	30%*
고정사업장이자 자회사가 아닌 운영중인 사업으로부터 받는 국외소득	있음	없음

\*세후 이익 금액의 30%

상기의 금액기준이 없는 소득유형은 재투자한 소득금액에 한하여 과세가 면제되며, 재투자 하지 않은 금액은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상기의 금액기준이 “30%”인 소득유형은 납세자가 30%의 기준을 준수하면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재투자한 금액이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투자금액과 30%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여 70%에 대하여 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일부 신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배당은 반드시 주주총회(또는 유사한 미팅)를 통하여 결의 및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배당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결의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경과규정으로 PMK-18 은 개인납세자가 2020 년 11 월 2 일 이후에 수령한 적격한 내국 배당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은 신청을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외 비상장 법인으로 부터 받은 국외배당의 30% 금액기준은 재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외 비상장 법인으로 부터 받은 국외배당에 대한 과세면제는 2020 년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2020 년 11 월 2 일 이후에 받은 배당에 대하여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3.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옴니버스 법하에서 과세가 면제된 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 및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외배당 또는 기타소득이 인도네시아



내에 충분히 재투자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일부 과세가되며, 이 경우 비율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과세 면제 매커니즘

납세자가 과세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연간 소득세 신고서상에 해당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더 이상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납세자가 재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령하거나 가득한 배당은 과세 대상이 되며, 개인납세자는 배당을 수령하거나 가득한 날의 익월 15 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납세자가 납부영수증에 대하여 Validation 을 받은 경우, Validation 일자에 따라 월별 소득세 신고서에 소득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5. 실행보고서 제출의무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는 배당을 수령하거나 가득한 월의 각각 3 개월 및 4 개월 내에 실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실행보고서는 배당 또는 기타소득을 수령하거나 가득한 과세연도부터 3 년간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E.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sations, NPOs)

옴니버스 법은 사회 및 종교 기관 분야에 등록된 적격한 NPOs가 수령하거나 가득한 잉여금이 시설 또는 인트라스트럭처에 4년 이내에 재투자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최소한 25% 이상 재투자되어야 하며, 잔여금액은 기부 기금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법 (Value Added Tax)

#### A. 생산 전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옴니버스 법 이전에는 부가세 과세등록 법인(*Pengusaha Kena Pajak/ PKP*)이 특정기간 내에 생산단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즉, 부가세 대상 재화/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등록 법인은 생산을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며, 부가세 매입세액은 더 이상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PMK-18 은 PKP 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반드시 해당 사업라인과 연관이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법인이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 또는 수출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법인이 부가세 과세대상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거나, 제조법인이 “자가생산”한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PKP 가 관련 적격한 공급을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PKP 의 자가사용, 거래처향 무료재화 공급, 본지사간 거래, 지점간 거래, 판매목적이 아닌 자산의 공급, 주요 사업과 연관되지 않은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은 PKP 가 생산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산 전 단계의 일반적인 기간제한은 3 년이며, 제조업 분야는 5 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국가전략프로젝트의 경우 6 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0 년 11 월 2 일 이전까지 생산 전 단계에 속하는 PKP 는 PMK-18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PKP 가 생산 전 단계의 기간규정 내에 생산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DGT 는 PKP 의 부가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생산 전 단계에 속하는 회사가 비즈니스 활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규 비즈니스와 연관된 부가세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부가세 매입세액의 경우 옴니버스 법 이전 규정과 유사하게 비공제 대상 부가세 매입세액이 됩니다.

## **B. PKP 등록 이전에 발생한 부가세 매입세액**

옴니버스 법하에서, DGT 가 납세자를 PKP 로 간주하는 경우 PKP 등록 이전에 발생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 매출세액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납세자가 PKP 로 등록이 되었어야 하는 시점부터 납세자가 PKP 로 간주되는 시점까지 적용이 됩니다.

PKP 로 간주되기 이전에 납세자가 VAT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간주 방법이 적용이 되거나, 과세결정통지서(SKP)의 발부로서 적용이 됩니다.

간주 방법 하에서의 VAT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PKP 로 간주되기 이전 기간에 대한 실제 VAT 인보이스상 VAT 금액은 공제되거나, 손금처리하거나 자본화 할 수 없습니다.
- PKP 는 부가세 처리에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즉, 과세표준 금액을 다른 금액으로 적용하거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순액으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방법)

간주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패널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PKP 는 간주 PKP 에 대하여 과세결정통지서가 2020 년 11 월 2 일부터 2021 년 2 월 17 일 사이에 발부된 경우에 과세결정통지서의 경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 VAT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VAT 매입세액이 세무조사시에 발견된 경우

VAT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VAT 매입세액이 세무조사시에 발견된 경우, 납세자는 과세예정통지서(SPHP)가 발부되기 이전까지는 동 VAT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D. 과세결정통지서(SKP)를 통하여 징수된 VAT 매입세액

과세결정통지서를 통하여 징수된 VAT 매입세액은 다음의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SKP 가 오직 VAT 매입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발부된 경우;
- PKP 가 과세결정통지서 상의 세무조사 결과를 완전히 동의하는 경우;
- 과세결정통지서의 모든 금액(세액 및 패널티 포함)이 납부된 경우;
- PKP 가 과세결정통지서에 대하여 조세 불복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모든 사항이 법에 따라 수행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종류의 과세결정통지서는 2020 년 11 월 2 일 이전에 발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2020 년 11 월 1 일 이후에 납부가 된 경우에는 VAT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매커니즘에 따라 VAT 매입세액은 과세결정통지서가 발부된 월 또는 3 개월 이내에 VAT 신고서에 신고를 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E. 소매업자(Retailer)인 PKP 의 VAT 인보이스 규정

PKP Retailer(PKP Pedagang Eceran)에 대한 신규 정의가 GR-9 에 규정되었으며, PKP 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최종소비자(이커머스 플랫폼 포함)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PKP Retailer 로 정의합니다.

최종소비자는 재화의 구매자 또는 서비스 수령자로서 구입한 재화/서비스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PKP Retailer 는 구매자의 신원 또는 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없이 VAT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VAT 인보이스는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PKP 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급과 관련하여 구매자의 신원 또는 판매자의 서명이 없이 VAT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PKP 의 자가사용의 경우. 이 경우 자가사용이 PKP 의 사업에 후속적인 생산 또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함;
- 최종소비자에게 선물로 지급되는 경우.



그러나, 특정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전자 부가세 인보이스(*e-Faktur Pajak/e-Faktur*)를 완전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 크루즈, 비행기, 토지 및 건물의 렌탈 및 공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일반 세무 행정 (General Tax Provisions and Procedures)

PMK-18 의 대부분의 변화는 옴니버스 법 및 GR-9 을 통한 국세기본법의 개정과 연관이 됩니다. 옴니버스 법하에서 신규로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납세자의 세금 분납 또는 이연납부 신청 및 적용기한에 대한 변경:

납부세금의 유형	신청서 제출기한	분납 또는 이연납부의 적용기한
연간소득세 신고서에 따른 납부	연간소득세 신고서의 제출이전 또는 제출시	익년도의 연간소득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토지 및 건물세(부동산세) 납부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부 이전까지	부동산세 및 세금결정고지서의 발부일로부터 24 개월까지
세금결정에 따른 납부*		

\*SKPs, Tax Collection Letters, Tax Objection Decisions, Tax Appeal Decisions, Judicial Review Decisions, or Amendments of decisions.

기존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은 납부기한의 9 영업일 이전까지 였으며, 분납 또는 이연납부의 적용기한은 부동산세 및 세금결정고지서의 발행 후 12 개월 이내이며, 연간소득세의 경우 익년도의 마지막 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였습니다.

- 소규모 납세자 및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납부 기한의 연장이 세금결정고지서의 발부일로부터 2 개월까지 가능하였던 사항이 세금결정고지서의 납부일로부터 2 개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PMK-18 은 옴니버스 법 개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적용시점(cut off)을 2020 년 11 월 2 일로 규정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은 GR-9 에 따라 적용이 되며, 추가적인 경과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국세환급 가산금 요청에 대한 지급은 다음의 기간에 따라 확정통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2020 년 11 월 2 일 이전 - PMK-226<sup>3</sup>에 따라 적용됨; 또는
  - 2020 년 11 월 2 일 이후 - PMK-18 에 따라 적용됨.

<sup>3</sup> MoF Regulation No.226/PMK.03/2013 (PMK-226) as lastly amended by MoF Regulation No.65/PMK.03/2018 dated and effective from 29 June 2018

또한,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제출된 국세환급 가산금 신청서의 경우, 신청서가 완전히 작성되어 세무서에 제출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 프로세스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b. 세금 분할 납부 및 이연납부 신청이 2021년 2월 17일 기준으로 진행중인 경우에는 PMK-242<sup>4</sup>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c. 옴니버스 법에서 규정되진 않았지만, PMK-18은 조세범죄의 기초증거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장기한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17일 이전에 연장이 요청된 경우에는 PMK-239<sup>5</sup>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d. 조세범죄의 세무조사의 종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1년 2월 17일 기준으로 진행중인 경우 PMK-55<sup>6</sup>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Email : [taehun.jung@pwc.com](mailto:taehun.jung@pwc.com))

**박인혁 회계사**  
(Email : [inhyuk.park@pwc.com](mailto:inhyuk.park@pwc.com))

<sup>4</sup> MoF Regulation No.242/PMK.03/2014 (PMK-242) dated and effective from 24 December 2014

<sup>5</sup> MoF Regulation No.239/PMK.03/2014 (PMK-239) dated 22 December 2014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15

<sup>6</sup> MoF Regulation No.55/PMK.03/2016 (PMK-55) dated and effective from 8 April 2016

##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mailto: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mailto:gerardus.mahe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mailto:raemon.utama@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pwc.com](mailto:adi.poernomo@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mailto:hasan.chandr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mailto:runi.tusit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mailto: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mailto:hendra.lie@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mailto:ryuji.sugawar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mailto:alexander.lukito@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pwc.com](mailto:hisni.jesica@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pwc.com](mailto:soeryo.adjie@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mailto:ali.widod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mailto:hyang.augustiana@pwc.com)

**Sujadi Lee**  
[sujadi.lee@pwc.com](mailto:sujadi.lee@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pwc.com](mailto:amit.xz.sharma@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mailto:kianwei.chong@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mailto:susetiyo.putranto@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mailto:andrias.hendrik@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mailto:lukman.budiman@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pwc.com](mailto:sutrisno.ali@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mailto:anton.a.manik@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pwc.com](mailto:mardianto.mardianto@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mailto:suyanti.halim@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mailto:antonius.sanyojaya@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mailto:margie.margaret@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pwc.com](mailto:tim.robert.watson@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mailto:ay.tjhing.ph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mailto:oki.octabiyanto@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mailto:tjen.she.siung@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mailto:brian.arnold@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mailto:omar.abdulkadir@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mailto:turino.suyatman@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mailto:dexter.pagayonan@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mailto:otto.sumaryoto@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mailto:yessy.anggraini@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mailto:enna.budiman@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pwc.com](mailto:parluhutan.simbolon@pw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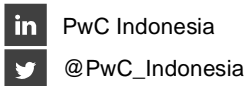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mailto:yuliana.kurniadjaja@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mailto:gadis.nurhidayah@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mailto:peter.hohtoulas@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mailto:yunita.wahadaniah@pwc.com)

[www.pwc.com/id](http://www.pwc.com/id)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mailto: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1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